### 국립특수교육원 종합감사 결과

#### 1. 감사 개요

○ 감사기간 : 2021. 3. 15.(월) ~ 3. 26.(금) 【10일간】

○ 감사인원 : 10명

#### 2. 감사결과 지적사항

가. 분야별 지적 건수

구 분	인사·복무	예산·회계	시설·재산	사업운영	계
지적건수	4	2	2	5	13

나. 세부 지적내용 및 처분 : "붙임" 처분서 참고

감사결과의 공개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학교(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익적 조치입니다. 따라서 감사결과 실명이 공개된 모든 학교(기관)가 비리에 연관되어 있다는 취지는 아니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1	정기승급 부적정	
	ㅇ 「공무원 보수규정」제13조,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르면	ㅇ주의(4명)
	공무원의 호봉 간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매달	ㅇ시정
	1일자로 승급한다고 되어 있고,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 부적정하게 관리한
	날부터 감봉은 12개월, 견책은 6개월 기간(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6개월 가산)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하기 바람
	승급시킬 수 없고, 승급제한 기간은 승급기간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국립특수교육원은 2016. 12. 28.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감봉3월 징계처분을 받은 A의 호봉승급을 관리하면서	
	징계처분에 따른 승급 제한기간인 15개월(감봉3월+승급	
	제한기간 12월)이 경과되고 2019. 4. 1.자로 승급 필요기간	
	1년을 충족하였음에도 2021.3. 감사일 현재까지 승급	
	시키지 않는 등 【붙임】 "징계자 미승급 현황"과 같이 위 A 등 직원 2명에 대해 승급 제한기간이 경과되고	
	승급 필요기간을 충족하였음에도 2021.3. 감사일 현재	
	까지 승급시키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징계자 미승급 현황

연번	직 급	성 명	징계처분일	징 계	징계사유	직전승급일	승급제한 기간	정상승급일
1	-	A	2016.12.28.	감봉3월	품위유지 위반	2016.12.05.	15월	2019.04.01
2	-	-	2019.07.08.	견 책	성실의무 위반	2018.09.01.	6월	2020.04.01.

지 적 사 항	처 분
건강검진 공가 사용 부적정	
ㅇ「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3조 및 제19조에 따르면	ㅇ주의(7명)
공무원은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ㅇ통보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하고,「국민건강보험법」	- 부적정하게 공기를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등을 받을 때 공가를 승인해야	사용한 7명에
	대해 해당연도에 지급한 연가보상비
	1일분을 회수하여
	관련회계에 세입
	3 3 3 3 3 3 3
	저축한 연가일수 에서 1일분을 공제
	하기 바람
	건강검진 공가 사용 부적정 <ul> <li>「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3조 및 제19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하고,「국민건강보험법」</li> </ul>

【붙임】

### 건강검진 공가 승인일 건강검진 미실시 현황

연번	人本	소속 직급 성명 공가승인일		コ ユ	고기스이이	실제 건	강검진
1 T T	五 号	শ ট	78 78	9/1 <u>9</u> 11 5	일자	복무여부	
1	-	-	В	2019.10.04.(금)	2019.10.02.(수)	해당없음 (16시 퇴근)	
2	-	-	-	2019.11.29.(금)	2019.11.16.(토)	해당없음 (토요일)	
3	-	-	-	2019.12.20.(금)	-	-	
4	-	-	-	2019.12.20.(금)	2019.10.12.(토)	해당없음 (토요일)	
5	-	-	-	2020.07.02.(목)	2020.07.01.(수)	해당없음 (비근무일)	
6	-	-	-	2020.12.16.(수)	-	-	
7	-	-	-	2020.12.28.(월)	2020.12.26.(토)	해당없음 (비근무일)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3	업무 인계·인수 부적정	
	ㅇ「행정 효율화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1조에 따르면	ㅇ기관주의
	공무원이 조직개편,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 조정 등의	ㅇ통보
	사유로 업무를 인계·인수할 때에는 해당 업무에 관한	- 인시발령 또는 업무
	모든 사항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도록 행정안전부령으로	분장 조정 등의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사유로 업무를 인계· 인수할 때에는 전자
	이용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하며, 후임자가 정해지지	문서시스템을 이용
	아니한 경우와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후임자에게	하여 인계·인수를
	업무를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고,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후임자가	실시하기 바람
	업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국립특수교육원은 2018.1.1. ○과 업무분장 조정으로 C 등 총 11명의 업무가 조정되었음에도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 인계·인수를 하지 않는 등【붙임】 "전자문서시스템 미이용 업무 인계·인수 현황"과 같이 2018.1.부터 2021.3.까지 위 ○과 등 6개부서 총 49명의 업무가 조정되었음에도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 인계·인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붙임】 전자문서시스템 미이용 업무 인계·인수 현황

연번		인계자				인수자	인수자			
선턴	현소속	직급	성명	인계일자	현부서	직급	성명	인수일자	인수인계 사용 여부	
1	-	-	-	2018.01.01.	O라	-	С	2018.01.01.	×	
2	-	-	-	2019.01.01.	O라	-	-	2019.01.01.	×	
3	-	-	-	2019.04.01.	O라	-	-	2019.04.01.	×	
4	-	-	-	2019.07.08.	O라	-	-	2019.07.08.	×	
5	-	-	-	2021.01.01.	0과	-	-	2021.01.01.	×	
6	-	-	-	2021.01.01.	0과	-	-	2021.01.01.	×	
7	-	-	-	2021.01.01.	0과	-	-	2021.01.01.	×	
8	-	-	-	2021.01.04.	O과	-	-	2021.01.04.	×	
9	-	-	-	2021.01.04.	0과	-	-	2021.01.04.	×	
10	-	-	-	2021.03.01.	0과	-	-	2021.03.01.	×	
11	1	-	-	2021.03.01.	O라	-	-	2021.03.01.	×	
				0과					11명	
					~					
				- 중	략 -					
					~					
5	-	-	-	2021.1.1.	-	-	_	2021.1.1.	×	
6	-	-	-	2021.1.1.	-	-	-	2021.1.1.	×	
				-과					6명	
				총 인원					49명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4	이해관계자 신규채용 전형위원 참여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제5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ㅇ경고(1명)
	학연, 지연, 종교, 직연(織緣) 또는 채용동기(採用同期) 등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	
	에게 해당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2018년 국립특수교육원 무기계약직 채용 계획」에	
	따르면 면접위원 서약서에 응시자와의 친인척관계 등	
	제척사유가 있는 경우 시험위원의 회피를 신청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국립특수교육원 D(시설업무 총괄)은(는) 2018. 7. 26. '공무직	
	(시설관리원) 채용'면접위원으로 참여하면서 2013.4.1.	
	부터 2016. 12. 31.까지 국립특수교육원 시설관리 용역	
	업체 직원으로 근무(국립특수교육원 O과 상주)하였던	
	E이(가) 면접심사 대상에 포함되어있음에도 시험위원 회피 신청 없이 면접심사에 참여한 사실이 있음	
	커의 신경 따의 신입급기에 접역한 기분이 있다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5	수입대체경비(원격교육연수 시·도분담금) 목적 외 사용	
	ㅇ「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에 따르면	ㅇ기관경고
	수입대체경비는「국가재정법」제53조 제1항 및「같은법	ㅇ통보
	수입대체경비는 「국가재정법」제53조 제1항 및「같은법시행령」제24조 제1항에 따라 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된 경비로서 업무수행과직접 관련된 자산취득비, 국내여비, 시설유지비 및보수비, 일시적인 업무급증으로 사용한 일용직 임금과초과수입 증대와 관련 있는 업무를 수행한 직원에게지급하는 보상적 경비를 지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업무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수입대체경비를지출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도, - 국립특수교육원은 2011.부터 2016.까지 F 등 5명을 수입대체경비인 시·도분담금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원격연수 사무원으로 채용하고,국비지원 공무직의 장기근무로 인한 인사고충을 해소(2018.9. '인사효율화방안'수립)한다는 명목으로 2019.1.부터 2021.3.감사일 현재까지 원격연수업무와 관련해서는 4명만을 배치하고,1명은 사무실을 달리하여 원격연수와 관련 없는 업무를담당하게 하였음에도 수입대체경비인 시·도분담금에서 5명분의 급여를 지급하는 등【붙임】"원격연수관련 공무직 채용자 근무 및 급여지급 현황"과같이 2019.1.부터 2021.3. 감사일 현재까지 시·도분담금총 2,471,000천원 중 원격연수와 관련 없는 업무를 수행하는 1명에 대한 인건비 합계 71,700천원(2019년 29,000전원, 2020년 33,600천원, 2021년 3.현재 9,100천원)을 수입대체경비	○통보 - 시·도 분담금에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 공무직 5명에 대한 직무 분석을 통해 인원 조정 등 개선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원격연수 관련 공무직 채용자 근무 및 급여지급 현황

(단위 : 천원)

	 당초 채용(5명)		실제 근무(4명)					예·결산서	상 시·도분	·담금 및 ·	급여 내역			
	কি≏ শাক(	28)		열세 단무(	( <del>4</del> 3)	201	2019. 2020. 2021. 3. 계			비고				
성 명	채용일자 (무기계약 전환일자)	원격연수 담당기간	성 명	채용일자 (무기계약 전환일자)	원격연수 담당기간	분담금	총급여(5명) (1인평균)	분담금	총급여(5명) (1인평균)	분담금	총급여(5명) (1인평균)	분담금	총급여(5명) (1인평균)	
F	2011.02.09 (2015.02.01)	2011.02.09.~ 2018.12.31.	-		2019.01.01.~ 감사일 현재									
-	2011.03.01 (2013.06.01)	2011.03.01.~ 휴직중	-		2019.01.01.~ 감사일 현재									
-	2012.12.11 (2015.03.20)	2012.12.11.~ 2018.12.31.	-		2019.01.01.~ 감사일 현재	798.000	145,000 (29,000)	891,000	168,000 (33,600)	782,000	45,500 (9,100)	2,471,000	358,500 (71,700)	
-	2016.02.01 (2018.01.01)	2016.02.01.~ 2018.12.31.	1	2021.01.18	2019.01.01.~ 감사일 현재									휴직대체
-	2016.06.01 (2018.01.01)	2016.06.01.~ 2018.12.31.		-	-									타 부서 배치

<sup>※</sup> 국가예산으로 급여가 지급되고 있는 원내 다른 공무직과 장기근무로 인한 인사고충 해소를 위해 2018.9월 특수교육원내 모든 공무직 대상으로 인사효율화 방안을 마련하여 순환근무 시행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6	피복비 집행 부적정	
	ㅇ 「2018~2019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에	ㅇ주의(3명)
	따르면 피복비는「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8조의2에	
	의거하여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자로서	
	제복착용이 불가피한 경우에 지급하고 기타 지원요원 등	
	에게 확대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으며, 방호원복과	
	청사관리(청소 등) 요원의 작업복은 외부위탁을 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도,	
	- 국립특수교육원은 2018.10.17. 청사관리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지 않은 G에게 105,600원 상당의 피복	
	(상의)을 구입하여 지급하는 등 【붙임】 "피복비 집행 부적정	
	현황"과 같이 2018.부터 2019.까지 청사관리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지 않은 위 G 등 직원 5명(누계11명)	
	에게 합계 1,792,300원 상당의 피복을 구입하여 지급한	
	사실이 있음	

### 피복비 집행 부적정 현황

(단위 : 원)

연도별	소 속	직급	성명	품명	수량	금 액	비고
2018	-	-	G	상의	1	105,600	
2018	-	-	-	상의	1	105,600	
2018	-	-	-	상의	1	105,600	
	20	018 소계			3	316,800	
<b>2</b> 019 상반기	-	-	-	상의	1	152,900	
<b>2</b> 019 상반기	-	-	-	상의	1	152,900	
<b>2</b> 019 상반기	-	-	G	상의	1	152,900	
<b>2</b> 019 상반기	-	-	-	상의	1	152,900	
<b>2</b> 019 상반기	-	-	-	상의	1	152,900	
	2019	상반기 소계			5	764,500	
2019 하반기	-	-	G	방한복	1	237,000	
2019 하반기	-	-	-	방한복	1	237,000	
2019 하반기	-	-	-	방한복	1	237,000	
	2019	하반기 소계			3	711,000	
		합 계			11	1,792,300	

지 적 사 항	처 분
시설공사 제경비 정산 부적정	
ㅇ「산업안전보건법」제72조 및 제73조에 따르면 건설	ㅇ주의(3명)
공사도급인은 2천만원(2020.7.1.이전 4천만원) 이상의 공사에	ㅇ시정(회수)
계상된 안전관리비는 건설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 감액정산하지
산업재해 예방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같은법	않은 산업안전
시행령」제59조, 제60조,「같은법 시행규칙」제89조,	관리비 등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에	5,698,470원을
따르면 공사금액 1억원(2019.7.1.이전 3억원) 이상 120억원	관련업체로부터 정산 및 회수
· · · · · · · · · · · · · · · · · · ·	하여 관련 회계에
	세입 조치하기
	바람
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하여야 하고,	
진흥법 시행규칙」제61조에 따르면, 환경관리비와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도 건설공사	
도급인의 소요비용 지출내역을 확인하여 다른 목적	
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는 정산	
하여야 하는데도,	
- 국립특수교육원은 2018.3.20. ㈜ ○○(대표 H)와(과) 계약한	
'ㄱ공사'(계약금액 43,117천원)를 준공처리하면서 지출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24,452원을 감액	
정산하지 않는 등 【붙임】 "산업안전관리비 등 미정산	
내역"과 같이 2018. 3.부터 2020. 3.까지 위 'ㄱ공사'등	
6건의 공사를 준공처리 하면서 지출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지설공사 제경비 정산 부적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및 제73조에 따르면 건설 공사도급인은 2천만원(2020.7.1.이전 4천만원) 이상의 공사에 계상된 안전관리비는 건설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하고,「같은법 시행령」 제59조, 제60조,「같은법 시행규칙」 제89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씨)」에 따르면 공사금액 1억원(2019.7.1.이전 3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의 공사(1개월 미만 제외)는 건설재해 예방 전문지도 기관의 산업재해 예방지도를 받아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는 계약 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하여야 하고,「같은법」 제34조 제3항,「같은법시행령」 제34조의4,「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 제3항에서 제4항,「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르면, 환경관리비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도 건설공사도급인의 소요비용 지출내역을 확인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는 정산하여야 하는데도,  - 국립특수교육원은 2018.3.20. ㈜ ○○(대표 H)와(과) 계약한 'ㄱ공사'(계약금액 43,117천원)를 준공처리하면서 지출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24,452원을 감액 정산하지 않는 등 [붙임] "산업안전관리비 등 미정산 내역"과 같이 2018.3.부터 2020.3.까지 위 'ㄱ공사' 등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및 안전관리비 등 합계	
	5,698,470원을 감액 정산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산업안전관리비 등 미정산 내역

(단위 : 원)

공 사 명	계약일	안전관리비		환경	하도급	제비율				
(계약상대자)	준공일	불가항목	재해예방	보전비	지급보증 수수료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	합 계			
	계약금액 (천원)	또는 미사용	지도 미실시 (안전관리비 20%)							
	2018.03.20.									
ㄱ 공사 ((주)○○, 대표 H)	2018.05.07.	-	-	-	24,452	6,614	31,060			
	43,117									
	2018.03.27.									
-	2018.04.30.	-	-	262,956	42,599	104,163	409,710			
	78,149									
	2018.04.22.									
-	2019.05.29.	560,000	-	-	-	190,904	750,900			
	174,858									
	2020.05.20.									
-	2020.07.28.	-	1,274,840	1,274,840	1,274,840	1,274,840	-	-	434,593	1,709,430
	267,865									
	2020.02.26.									
-	2020.12.10.	-	_	1,690,000	-	489,417	2,179,410			
	2,838,678									
	2020.03.06.									
-	2020.12.10.	_	460,860	-	-	157,107	617,960			
	112,779									
합 계(6건)		560,000	1,735,700	1,952,956	67,051	1,382,798	5,698,470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8	공사 감독 및 준공 검사 부적정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ㅇ주의(2명)
	제14조,「같은법 시행령」제55조,「같은법 시행규칙」	ㅇ시정(회수)
	제67조에 따르면 시설공사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 부족시공한 시설
	공사감독을 추진할 때에는 설계도서의 내용과 적합	공사비 4,728
	하게 행하여지고 있는지 살펴야 하고, 계약이행의 내용이	천원을 관련업체로 부터 회수하여
	당초의 계약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담당자는	관련 회계에 세입
	그 사실 및 조치에 관한 사항을 즉시 보고하여 공사가	조치하기 바람
	적정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때에는 계약서, 설계서 그 밖의 관계서류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계약이행 내용이 계약에 위반	
	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시정조치(재시공, 감액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데도,	
	- 국립특수교육원은 2019. 4. 22. □□(대표 I)와(과) 계약한	
	'ㄴ 공사'(계약금액 174,858천원)에 대한 준공검사를 하면서	
	설계된 석재트러스 시공 부분이 설계도서 내용(ㅁ50*50@500,	
	2겹)과 다른 규격(ㅁ50*50@500, 1겹)으로 시공되었음에도	
	그대로 준공 처리함으로써 2,812천원의 공사비를 과다	
	지급하는 등 【붙임】 "시설공사 시공 부적정 현황"과	
	같이 2019. 4.부터 2020. 12.까지 위 'ㄴ 공사'등 2건의	
	공사가 설계도서 내용과 다른 규격으로 시공되었음	
	에도 그대로 준공 처리함으로써 합계 4,728천원의	
	공사비를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음	

### 시설공사 시공 부적정 현황

(단위 : 천원)

공사명	계약일	77 m²	설계도	E서①	실제기	시공②		고 D-②)
(계약상대자)	준공일 계약금액	품 명	계약 물량	금액	시공 물량	금액	면적	금액
	2019. 4.22.	석재트러스 (ロ50-50@500,2겹)	38.8 m²	6,713	-	-	38.8 m²	6,713
ㄴ공사		석재트러스 (ロ50-50@500,1겸)	-	-	<b>45</b> m²	3,893	-45 m²	-3,893
(□□, 대표 I)	2019. 5.29.	인조대리석 붙임(벽) 12T	38.8 m²	6,150	<b>45</b> m²	7,133	-6.2 m²	-983
	174,858	원가계산에 의한 기타경비 등	-	4,796	-	3,821	-	975
	소 계		-	17,659	-	14,847	_	2,812
	2020. 2.26.	PHC파일항타	997m	32,335	952m	30,880	45m	1,455
-	2,838,678	원가계산에 의한 기타경비 등	-	10,019	-	9,558	-	461
	소 계			42,354	-	40,438		1,916
	합 계		-	60,013	-	55,285	-	4,728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9	△△사업 성과지표 실적 허위 작성	
	○ 「국가공무원법」제56조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ㅇ경징계(1명)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국가재정법」	ㅇ경고(2명)
	제8조 제1항, 제2항, 제9항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별도조치>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예산	ㅇ통보(예산담당관)
	요구서를 제출할 때에 다음 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
	전년도 예산의 성과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예산안과 그에 따라 작성된 성과	
	계획서는 사업내용 및 사업비 등이 각각 일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회계법」제13조, 제14조, 제15조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결산보고서는 결산개요, 세입세출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로 구성되며, 성과보고서는 성과	
	계획서에서 정한 성과목표와 그에 대한 실적을 대비	
	하여 작성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국립특수교육원 J은(는) 2017.12.27. '2017년 △△ 사업'	
	성과지표인 '개발자료의 유용성' 조사 결과에 대한 내부	
	문서{2017년 △△ 사업 유용성 및 만족도 조사 결과(2017.12.27.)}를	
	작성하면서 국립특수교육원 설문조사 시스템 조사결과	
	(85.0점)가 성과목표(86.2점)에 1.2점 미달되었음에도 성과	
	목표를 달성한 것처럼 실제 조사결과 보다 1.3점 높게	
	(86.3점) 실적을 작성하는 등 【붙임】 "2017년 ~ 2018년	
	△△ 사업 성과지표 실적 허위 작성 현황"과 같이	
	2017. 12월부터 2018. 12월까지 위 '개발자료의 유용성' 등	
	'2017년 ~ 2018년 사업'성과지표 4개 실적에 대한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내부문서를 작성하면서 국립특수교육원 설문조사 시스템	
	조사결과가 성과목표에 미달되었음에도 성과목표를	
	달성한 것처럼 실제 조사결과 보다 적게는 0.7점에서	
	많게는 1.3점까지 높게 실적을 작성한 사실이 있고,	
	- 나아가, 2018. 2. 28. '2017년 △△ 사업'성과보고서의	
	성과지표 실적도 위 결과보고 대로 허위로 작성*하여	
	교육부에 제출한 사실이 있음	
	* (실제 조사) 개발자료의 유용성 85.0점, 사업수혜자 만족도 85.4점 (허위 작성) 개발자료의 유용성 86.3점, 사업수혜자 만족도 86.1점 (성과 목표) 개발자료의 유용성 86.2점, 사업수혜자 만족도 86.1점	
	※ 2018년 '△△ 사업'성과보고서는 J(2019.1월 연수과로 전보)의후임자 K이(가) 2019.1월 J이(가) 작성한 문서를 근거로 성과지표 실적을 작성하여 교육부에 제출함	

### 2017년 ~ 2018년 △△ 사업 성과지표 실적 허위 작성 현황

#### □ 총 괄

N	2017년 성고	가지표 실적	2018년 성과지표실적		
구 분 	개발자료의 유용성(점)	사업수혜자 만족도(점)	개발자료의 유용성(점)	사업수혜자 만족도(점)	
1. 성과목표(A)	86.2	86.1	86.4	86.2	
2. 실제 설문조사 시스템 결과(B)	85.0	85.4	84.6	84.9	
3. 설문조사 결과 내부문서(C) ※ 성과보고서 제출자료	86.3	86.1	86.5	86.3	
4. 성과목표 - 설문조사 시스템 차이 (D=A-B)	-1.2	-0.7	-1.8	-1.3	
5. 성과목표 - 내부문서 차이 (E=A-C)	0.1	0	0.1	0.1	
6. 내부문서 - 설문조사 시스템 차이 (F=C-B)	1.3	0.7	1.9	1.4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10	원격연수콘텐츠 개발 용역 검사업무 부적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 및	ㅇ경고(1명)
	「같은 법 시행령」제55조 제6항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ㅇ주의(2명)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ㅇ시정(회수)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및 그 밖의 관계서류에	- 정산하지 않은
	따라 이를 검사해야 하고,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지체상금 합계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해야 하며, 「국립	해당 업체로부터 회수하여 관련
	특수교육원 ▷▷ 개발 제안요청서('20.3.10., 조달청 입찰	회계에 세입 조치
	공고)」에 따르면 'ㄷ' 교육과정은 21개 차시로 구성하도록	하기 바람
	되어 있는데도,	
	- 국립특수교육원 원격교육연수원은 2020. 12. 23. '▷▷(2종)	
	개발(2020.4.7.~2020.12.3., 150,700,000원, ㈜▽▽)′산출물을 검사	
	하면서 'ㄷ' 교육과정이 20차시로 구성되어 1차시가	
	미달됨에도 2020.12.4.부터 2020.12.23.에 해당하는	
	지체상금 3,767,500원만 부과하고 위 산출물을 적격으로 검사 처리하여 잔금 41,442,500원 전액을 지급한	
	스로 검사 시니아의 전급 41,442,500년 전력을 시급인 사실이 있음(㈜▽▽은(는) 2021.1.29. 위 교육과정의 21차시를	
	납품*)	
	* 2021.1.29. 납품에 따른 지체상금 : 6,969,875원	
	- 부과기간 : 2020.12.24.~2021.1.29.(37일)	
	- 지체상금률 : 계약금액(150,700,000원)의 0.125%, 1일 188,375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11	원격교육연수원운영위원회 심의 없이 원격연수 콘텐츠 개발	
	○ 「국립특수교육원 운영규정」제13조, 제14조 및 제39조에	ㅇ기관주의
	따르면 국립특수교육원장은 특수교육발전에 관한 연구,	
	연수, 정보지원 사업 추진을 위하여 기본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기본운영 계획 및 주요업무를 심의·조정·	
	평가·주요업무보고를 위하여 운영협의회를 설치하며,	
	원장은 원격교육연수원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따로	
	정한다고 되어있고, 「국립특수교육원 부설 원격교육	
	연수원 운영규정」제2조 및 제3조에 따르면 연수원은	
	특수교육 관련 원격연수 운영, 특수교육 관련 원격연수	
	콘텐츠(연수과정) 개발, 기타 원격연수에 관한 기능을	
	수행하고, 원격연수의 운영전반, 원격연수의 콘텐츠	
	(연수과정) 개발, 운영규정 및 기타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원격교육연수원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를	
	둔다고 되어있는데도,	
	- 국립특수교육원 부설 원격교육연수원은 2018년도 'ㄹ' 등	
	3개 과정의 원격연수 콘텐츠를 개발(예산액 : 162,000천원)	
	하면서 운영위원회 심의 없이 2018. 1. 4. '2018년 국립	
	특수교육원 긴급 사업 심의회'(운영협의회, □과 주관)의	
	심의만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등 【붙임】 "운영위원회	
	미심의 원격연수 콘텐츠 개발 현황"과 같이 2018. 1. 부터 2021. 3. 감사일 현재까지 위 'ㄹ' 등 25개 과정의	
	원격연수 콘텐츠를 개발(총 예산액 1,017,950천원)하면서	
	운영위원회 심의 없이 운영협의회 심의만으로 사업을	
	추진한 사실이 있음	
	※ 국립특수교육원 부설 원격교육연수원은「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등 개정으로 2021.1.6. 행정상 폐원	

### 운영위원회 미심의 원격연수 콘텐츠 개발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연도	과정명(콘텐츠명)	예산액	운영 위원회	운영 협의회	비고
1	2018	근				7) 7
2	2018	-	162,000	×	'18.01.04.	긴급 사업 심의
3	2018	-				64
4	2019	-				
5	2019	-	122 400			
6	2019	-	132,480			
7	2019	-				-1 H
8	2019	-		×	'19.01.29.	기본 계획 심의
9	2019	-				심의
10	2019	-	152,520			
11	2019	-				
12	2019	-				
13	2020	-	05.050			
14	2020	-	85,250	×	(00.01.00	기본
15	2020	-	150 500		<b>′</b> 20.01.22.	기본 계획 심의
16	2020	-	150,700	×		
17	2021	-				
18	2021	<del>-</del>				
19	2021	<del>-</del>	155,000	×		
20	2021	-				-1 H
21	2021	-			'21.01.27.	기본 계획 심의
22	2021	-				(설계
23	2021	-	100.000	<u> </u>		
24	2021	-	180,000	×		
25	2021	-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12	학술정보관 도서자료 관리 부적정	
	○ 「국립특수교육원 학술정보관 운영규정」제11조, 제12조 및	ㅇ기관경고
	제17조에 따르면 직원에 대한 자료 대출 기간은 90일	ㅇ주의(1명)
	이내로, 대출자료는 기한 내 반납하여야 하고, 대출자가 본 교육원 퇴직, 전출, 휴직, 수료 및 기타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대출한 도서를 즉시 반납하여야 하며, 대출자료의 반납기한을 경과했을 경우 해당 자료의 반납시까지 다른 자료의 대출을 중지하고, 1책당 연체 일수에 상당하는 기간 동안 대출을 정지하며, 대출자 또는 열람자가 자료를 오손 또는 분실하였을 시는 동일자료 현품 배상 또는 운영회의 변상결정액에 의하여 현금으로 국고에 귀속시킨다고 되어있는데도, - 국립특수교육원 학술정보관은 L이(가) 2018. 7.30. 대출한 '(제대로 알고 쓰는) R 통계분석'등 6종의 도서자료를	○통보 - 도서자료 관리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기 바라며, 미반납된 도서자료는 오손· 분실 여부 등을 확인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 하기 바람
	반납기한(2018. 10. 28.)보다 214일 지연된 2019. 5. 30. 반납하였음에도 연체일수에 상당하는 기간 동안 대출을 정지하지 않고, 자료 반납 당일 L에게 위 '(제대로 알고 쓰는) R 통계분석'등 6종의 도서자료를 다시 대출하는 등【붙임】"학술정보관 도서자료 관리 부적정 현황"과같이 위 L 등 직원 36명이 대출한 위 '(제대로 알고 쓰는) R 통계분석'등 총 289종(중복포함)의 도서자료를 반납기한보다 짧게는 2일부터 길게는 345일까지 지연하여 반납하거나, '(세상의 모든 것의 기원) 오리진 1. 보온'등총 22종의 도서자료는 2021. 3. 감사일 현재까지 반납하지 않고 있는데도(9명), 대출 정지*등 별다른 조치를취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학술정보관 도서자료 관리 부적정 현황

번호	소속	직	성 명	도서자료명 대출일 반납 기한 반납일					정지 기간 여부	비 고 (대출정지 기한)		
1	-	-	L	(제대로 알고 쓰는) R 통계분석	<b>'18.07.30</b>	<b>'18.10.28</b>	<b>'</b> 19.05.30	214	-			
2				Achievement and Inclusion in School	<b>'</b> 18.07.30	<b>'18.10.28</b>	'19.05.30	214	-			
3				Creating Inclusive Classrooms : Effective and Reflective Practices for All Students	<b>'18.07.30</b>	′18.10.28	<b>′</b> 19.05.30	214	-			
4				Inclusive Education for the 21st Century	<b>'</b> 19.05.30	214	-	-				
5				Reconsidering Inclusion : Sustaining and building inclusive practices in schools	<b>'</b> 18.07.30	<b>′</b> 18.10.28	'19.05.30	214	-			
6				The Inclusive Classroom : Strategies for Effective Differentiated Instruction	'18.07.30	'18.10.28	<b>'</b> 19.05.30	214	-			
7				(제대로 알고 쓰는) R 통계분석	<b>'</b> 19.05.30	<b>'</b> 19.08.28	'19.11.07	71	0			
8				Achievement and Inclusion in School	'19.05.30	'19.08.28	'19.11.07	71	0			
9				Creating Inclusive Classrooms : Effective and Reflective Practices for All Students	<b>'</b> 19.05.30	'19.08.28	'19.11.07	71	0			
10				Inclusive Education for the 21st Century	'19.05.30	'19.08.28	'19.11.07	71	0			
11				Reconsidering Inclusion : Sustaining and building inclusive practices in schools	'19.05.30	<b>′</b> 19.08.28	'19.11.07	71	0			
12				The Inclusive Classroom : Strategies for Effective Differentiated Instruction	'19.05.30	'19.08.28	'19.11.07	71	0			
13				(제대로 알고 쓰는) R 통계분석	'19.11.07	′20.02.05	'21.01.15	345	0	'19.12.30		
14				Achievement and Inclusion in School	'19.11.07	′20.02.05	'21.01.15	345	0			
15				Creating Inclusive Classrooms : Effective and Reflective Practices for All Students	'19.11.07	'20.02.05	'21.01.15	345	0			
16				Inclusive Education for the 21st Century	'19.11.07	′20.02.05	<b>'21</b> .01.15	345	0			
17				Quality Indicators for Assistive Technology: A Comprehensive Guide to Assistive Technology Services	'19.11.07	'20.02.05	'21.01.15	345	0			
18				Reconsidering Inclusion : Sustaining and building inclusive practices in schools	'19.11.07	'20.02.05	'21.01.15	345	0			
19				The Inclusive Classroom : Strategies for Effective Differentiated Instruction	'19.11.07	'20.02.05	'21.01.15	345	0			
				~								
				- 중 략 -								
~												
510	-	-	-	아주 작은 습관의 힘(Atomic Habit)	'20.03.12	'20.04.02	<b>'20.04.08</b>	6	-	-		
511				고통은 나눌 수 있는가 : 고통과 함께함에 대한 성찰	′20.04.08	′20.04.29	′20.04.22	0	0	'20.04.14		
					지연반납 미 반 납			36명	289			
	합	계						9명	22			
					정지기간 중 대출				344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13	외래강사 원고료 과다 지급	
	ㅇ 「국립특수교육원 외래강사선정 및 수당 등 지급 규정」	ㅇ기관주의
	제6조 제2항 관련 [별표4]에 따르면 외래강사에게 지급	ㅇ시정(회수)
	하는 원고료 지급 단가는 A4 1매당 15,000원(시간당 4매	- 과다지급한 원고료
	이내)으로 하되, 강사가 기존원고를 활용할 경우에는	230,000원을 M 등 5명
	원고 동일성 검사*에 따라 기존원고를 30%미만 수정	으로부터 회수하여 관련회계에 세입
	(미수정) 시 미지급, 30~70% 미만 수정(부분수정) 시 50%, 70% 이상 수정(전체수정) 시 100%를 지급한다고 되어	조치하기 바람
		ㅇ통보
	있는데도, * 국립특수교육원 원고 동일성 검사 프로그램(아니파이어리시)에 의하되, PPT, PDF파일의 경우 육안으로도 재확인 - 국립특수교육원은 '2019년도 ㅁ 과정'('19.8.19.~8.21.) 강사인 M의 "ㅂ" (2시간, 8매) 강의원고에 대한 원고 동일성 검사결과가 72%(30% 미만 수정)로 원고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야 하는데도 원고료 90,000원을 지급하는 등 【붙임】"기존원고 활용에 대한 원고료 과다 지급현황"과 같이 위 M 등 외래강사 5명의 강의 원고(5건)에 대해 원고 동일성 검사결과에 따른 원고료 지급기준보다 적게는 20,000원부터 많게는 90,000원까지 합계 230,000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음	- 향후 외래강사 원고료 지급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하기 바람

### 기존원고 활용에 대한 원고료 과다 지급 현황

(단위 : 원)

연번	강 의 명	연수일정	소 속	직	성 명	원 고 명	원 고 동일성 검 사 결 과	지 급 기준액	실지급액		정상지급액		과 오 지급액	비고
	78 FT 78					편 고 경			금 액	비율	금 액	비율	지급액	41 12
1	2019년도 ㅁ 과정	'19. 8.19. ~ 8.21.	-	1	М	ㅂ(2시간)	72%	120,000	90,000	75%	0	0%	90,000	
2	-	'20. 6.23. ~ 6.26.	1	-	-	-	46%	120,000	100,000	83%	60,000	50%	40,000	
3	-	'20. 7.21. ~ 7.24.	1	-	-	-	42%	120,000	100,000	83%	60,000	50%	40,000	
4	-	'20. 8.18. ~ 8.21.	-	-	-	-	68%	120,000	80,000	67%	60,000	50%	20,000	
5	-	′20.11.27.	-	1	1	-	37%	120,000	100,000	83%	60,000	50%	40,000	
합 계								600,000	470,000		240,000		230,000	